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695호 2012년 4월 20일(금)

공 고

○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2

회 람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공고 제2012-279호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및「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됨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을 권장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 시설 설치·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빗물이용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4. 예고기간 : 2012. 4. 21~5. 10(20일)

5. 자치법규안: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하수행정담당)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17-030/ 속초시 해오름로 99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담당 (전화: 033-639-2392, FAX: 639-2497)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7.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수질환경사업소 하수행정팀 김명기(전화 : 033 - 639-23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 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지역에서의 물의 재이용 촉진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국가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물 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 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6. 그 밖에「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의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의료시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③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④ 중수도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규칙 제5조를 준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 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8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시장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단가를 산정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건축물 용적률의 기준 완화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수도급수 조례」와「속초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속초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범사업 발굴)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홍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0조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은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가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를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4호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처리수”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이용수”를 “재처리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지붕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

시설 설치자	주 소			
	성 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	시설 위치			
	시설 용량	㎥		
	사용 용도			
	설치 비용	원		
	착공일		완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	수질 악화 시 대책		
	오접(誤接)·오음(誤飮) 방지대책		
	환경 보존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부칙 제4조 다른 조례 개정자료)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⑤ 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 해서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3.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